제27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2021. 3. 4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·재무위원회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2021년 3월 4일
전문위원 최 광 호

## 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2021 - 17

나. 발 의 자 : 김현희 의원 외 7명

다. 발의일자 : 2021년 2월 18일

라. 회부일자 : 2021년 2월 25일

## 2. 개정이유

2021년도 무상교육 대상이 고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되고 “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” 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가. “지급대상” , “장학금” 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 수정(안 제4조)

나. “추천” 장학금 추천 단체를 현행에 맞게 수정 (안 제5조)

다. “심사” , “지급시기” 조항을 현안에 맞게 수정(안 제6조, 안 제8조)

라.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및 띄어쓰기 정비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지방자치법」제22조

나. 협조부서 : 자치행정과

다. 입법예고(2021.2.19.~2021.2.24.) 결과 : 의견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개정 취지

❍「초·중등교육법」개정으로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이 2021년도 전면 시행되고, 「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이 개정됨에 따라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대상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 내용

❍ 장학금 지급 대상 변경 (안 제4조제1항)

-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"고등학생"에서 "대학생"으로 변경

❍ 장학금 신청기준 변경(안 제4조제2항)

- "1명에 대하여 1회(2분기분)"를 "1명당 1회(한 학기분)"로 변경

❍ 다른 장학금 지원 시 등록금 총액 초과 금지 (안 제4조제2항)

- 다른 장학금 지원 시 "지급 제외"에서 "한 학기 등록금 총액초과 제한"으로 변경

❍ 장학생 추천 단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(안 제5조)

-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강서구 협의회장(이하 "구 협의회장"이라 한다)과 강서구 새마을 부녀회장(이하 "구부녀회장"이라 한다)에서 "새마을 운동조직"으로 변경

❍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및 띄어쓰기 정비 (안 제2조제4호, 안 제3조제1항·제2항, 안 제4조제2항, 안 제5조, 안 제6조제1항, 안 제7조, 안 제9조제1항, 안 제10조, 안 제14조)

## 다. 종합 의견

❍ 본 개정조례안은「초·중등교육법」[1] 개정으로 2021년도부터 고등학교 무상의무 교육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성실히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기준 등을 실효성에 있게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

- 안 제4조제1항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을 "고등학생에서 대학생" 으로
-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장학금 신청기준 및 다른 장학금 지급 조항을
  - "1명당 1회(한 학기분)" 로 한정하여 장학금 혜택이 특정회원에게 편중되지 않고 다양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고,
  - 다른 장학금 혜택을 받는 경우 획일적으로 지급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대상자의 불이익을 초래한 조항을 개정하여, 등록금 총액을 초과하지 않게 지급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
---

1) **제10조의2(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)**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(無償)으로 한다.
1. 입학금
2. 수업료
3. 학교운영지원비
4. 교과용 도서 구입비

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,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9. 12. 3.]
[시행일]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
1. 2020학년도: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
2. 2021학년도 이후: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

- 안 제5조에서는 “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강서구협의회장(이하 “구협의회장” 이라 한다)과 강서구 새마을부녀회장(이하 “구부녀회장” 이라 한다)를 현행 법령 체계에 따라 “새마을 운동조직” 으로 정비하였음

❍ 이번 조례안은 행정안전부「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을 반영한 것으로 “새마을지도자의 중·고교 자녀에 대한 장학금” 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구체화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 내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됨.

## 참 고 관계 법령

### ❏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# ❏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

| 현 행 | | 개 정 | |
|---|---|---|---|
| 301 일반 보전금 | **02. 장학금 및 학자금**<br>1.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<br>(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)<br>가. 통·리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통·리장 자녀장학금<br>1) 적용대상 : 통·리장의 자녀 중 중,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<br>2) 지급액 : 교육부 및 시·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<br>나.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<br>1) 적용대상 : 조례규정에 의거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중,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<br>2) 지급액 : 교육부 및 시·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<br>다.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| 301 일반 보전금 | **02. 장학금 및 학자금**<br>1.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<br>(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)<br>- 통·리장 자녀,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등에 대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<br>(교육부 및 시·도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기준 공납금 참고) |